

손에 잡하는 길라 학부모회 잡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Chapter I 조례와 규정으로 학부모회 이해하기 12

목적	학부모회는 왜 운영하나요?	13
정의	학부모회는 관련 용어 풀이	14
근거	학부모회는 꼭 있어야 할까요?	15
기능	학부모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16
구성	학부모회는 누가 운영할까요?	20
조직	학부모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22



Chapter II Q&A로 알아보는 학부모회

32

1. 학부모회가 궁금하다?	32
2. 총회는 무엇인가?	33
3. 임원을 선출해볼까요?	38
4. 학부모회 운영은 이렇게!	41

Chapter III 학부모회 따라하기 (서식 모음)

44

우리 학교 학부모회 연간 활동 가이드



01

2월~3월초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회 개최를 위한 계획 수립
-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안) 준비
-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회의 안전 및 기타 총회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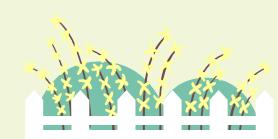


02

3월초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운영

- 총회 개최 안내 및 임원 선출 공고
-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후보자 등록
- 선거 및 총회 공고(총회 7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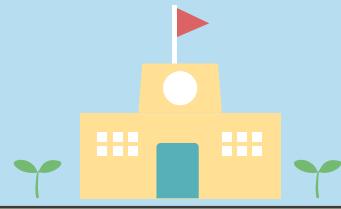
03

3월~4월 총회 개최



-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 학부모회 임원선출
- 기타 의결이 필요한 사항





05

12월~ 다음연도 3월 학부모회 활동 마무리



- 학부모회 운영평가
- 학부모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
- 학부모회 인수인계 자료 작성
- 차기 학부모회 활동 계획(안) 및 예산(안) 수립

04

3월~12월 학부모회 활동



-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각 학교별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운영 등



Chapter

I

손에 + **길라잡이**
잡하는 학부모회

조례와 규정으로 학부모회 이해하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9.] [인천광역시조례 제6483호, 2020. 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인천○○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정 2017. ○○. ○○.

개정 2019. ○○. ○○.

개정 2022. ○○. ○○.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인천○○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인천○○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 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명, 감사 ○명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 주인을 거쳐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P. 40 Q&A 7. 참고.

조례와 규정으로 학부모회 이해하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학부모회의 목적과 역할, 임원, 조직 구성에 관한 기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회 상황에 맞게 바꾼 규정이 「인천OO학교 학부모회 규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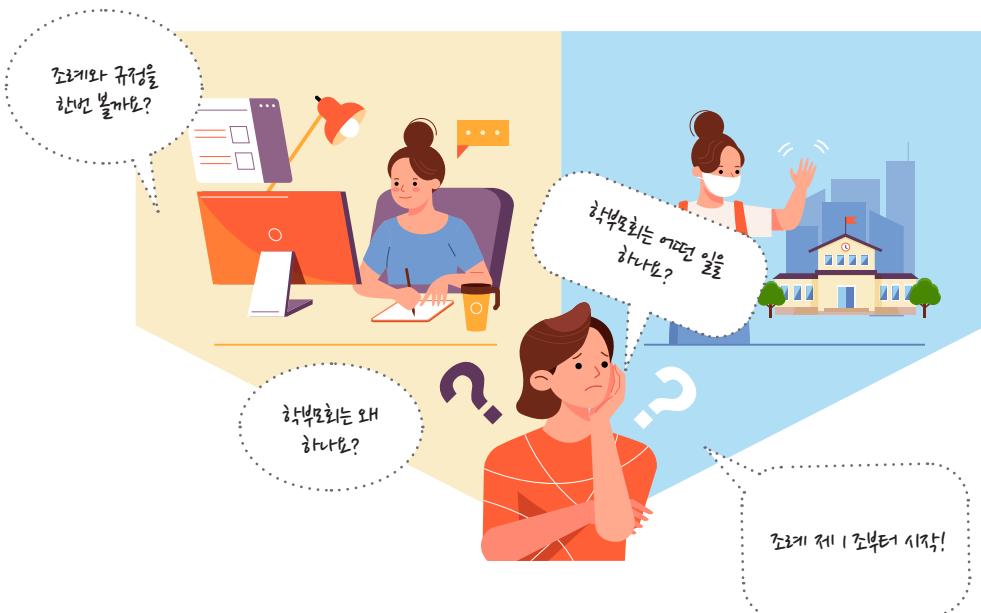
「인천OO학교 학부모회 규정」에서는 학부모회가 어떤 일을, 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상황에 맞는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에 대해 알아볼까요?

학부모회 조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1조(학부모회의 조직)
제2조(정의)	제12조(총회)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제14조(대의원회)
제5조(기능)	제1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제6조(회원)	제16조(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제7조(임원 등의 구성)	제17조(해산)
제8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재정지원 등)
제9조(임원의 직무)	제19조(위임 규정)
제10조(임원의 자격)	부칙

이 중 학부모회를 조직·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❶ 알아보기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와 지원을 총괄하는데 그 **목적은 학교교육 발전입니다**. 학교교육이 발전한다는 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충분히 배우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학부모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학교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참여하고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1항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회 활동은 보호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학부모의 마음이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는 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모든 아이를 위한 길이 나의 아이를 위한 길로 통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 알아보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여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이견, 혼란 및 오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합니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상당수가 성인이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학부모회의 의무설치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구성이 다양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계부모도 친권자 동의서 및 증빙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학부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부모회”란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잠깐!**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이며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기구이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알아보기

-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관할 공립학교에 **학부모회 의무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설치합니다. 각급 학교에 학부모회를 설치하여 학부모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설 학교는 개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부모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 알아보기

- 학부모회의 명칭은 통일적으로 “학교명 + 학부모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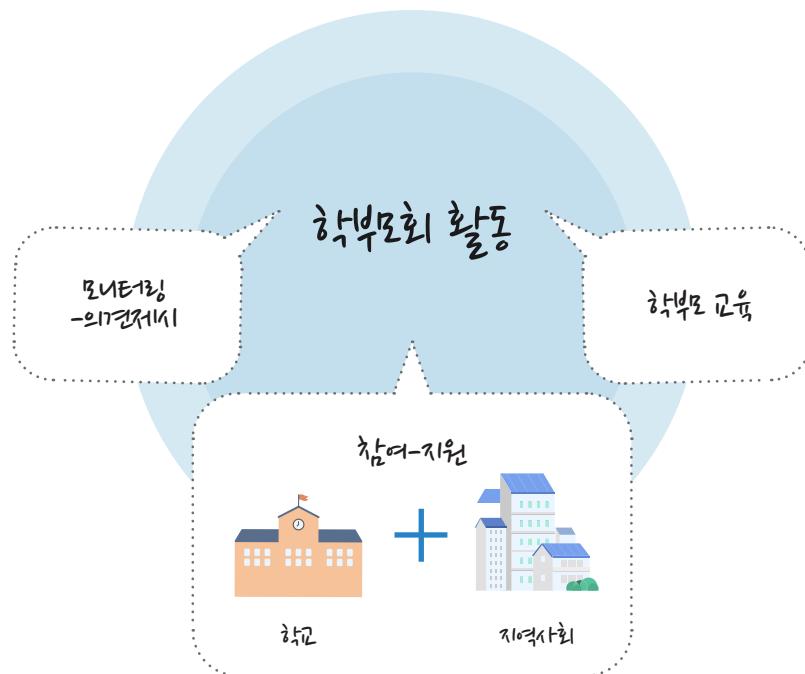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❶ 알아보기

- 조례에 규정된 학부모회 활동은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부모교육’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그 외에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 학교의 사업은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부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학부모회 활동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첫 번째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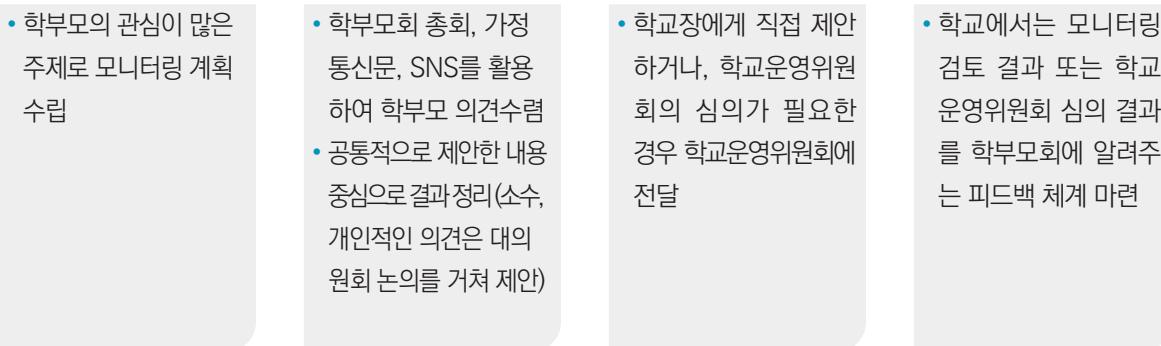
학부모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라면,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에 대해 모니터링과 필요한 의견을 학교에 제시하여 학교운영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니터링은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간섭하는 활동이 아니라 학교에 전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그럼 학부모회는 어떤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 – 학교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운영, 현장체험학습, 학교시설 및 급식 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학부모 의견 모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 학년 · 기능별 학부모회 및 동아리 등 학부모 모임을 통한 의견교환 – 학부모회 카페 · 랜드 · 카톡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의견교환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교환 등 • 의견제시 (모니터링 결과를 학교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제시 – 학교 내 각종 위원회 * 참여하여 의견제시

▶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추진 절차 (예시)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모니터링 실시 및 정리 > 모니터링 결과 의견제시 > 결과 반영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예 · 결산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졸업앨범소위원회 등),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수학여행 · 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교내위기관리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 지원

두 번째는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 지원”입니다.

학부모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교육에 참여 ·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학부모회나 학교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은 물론이며, 학부모 상담주간 및 교육과정 설명회 등의 참여와 학부모 자신의 역량과 재능에 따른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도 모두 포함합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는 가정 및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공동체 간 협력관계 증진이 요구되는 현시대에 더욱 강조되고 있답니다.

④ 과연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참여 · 지원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형	활동 내용
교육활동	• (급식) 학생 급식 식재료 검수, 배식 지원, 급식 모니터링 등
	• (안전) 등 · 하굣길 교통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 · 외 지도 등
	• (도서) 명예 사서, 책 읽어주기, 학교 도서관 활용 교육지원 등
체험활동	• 학교 숲 가꾸기 및 각종 학교 행사지원 등
	• 학생 진로 · 직업 체험 지원, 학생 생활 멘토링 상담 및 방과 후 학생 돌봄 등
학생상담 및 지원	• 장애 학생 및 다문화 가정 지원, 학교폭력 관련 학생 공동 보호 등
	• 교내 · 외 봉사 활동 인솔 및 지도, 독거노인 반찬 봉사, 저소득층 가정지원 등 지역과 연계한 봉사 활동

▶ 학교 운영계획에 따른 학교교육 활동 참여 · 지원 방법 (예시)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 참관

- 학교운영계획에 따른 수업공개 참관
- 수업활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력을 높임

학교 교육과정 등 학교설명회 참여

- 학기 초에 실시하는 설명회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이해 확대

학부모 상담주간 참여

- 학기별 1회 이상, 1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담 기회 제공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운영 참여

- 학부모회 총회(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민주적인 선출절차(직접선출)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

위와 같은 학부모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하여 학부모와 자녀 간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여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학부모가 아닌 전체 학부모의 참여 활동을 위하여 학부모회와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참여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세 번째는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입니다.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교육관 정립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자녀교육을 통해 건강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학부모 본인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의 분야는 아주 다양한데요. 자녀양육을 위한 학습지도, 인성지도, 진로교육부터 각종 교육정책 연수까지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 그럼 학부모회와 함께 할 학부모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학부모교육 추진 절차 (예시)

수요조사

계획수립 및 교육준비

교육실시 및 평가

- 학부모 희망 교육 수요조사
 - 가정통신문, SNS 등 활용
- 프로그램 선정
 - 학부모교육 예산범위에서
다수 선호하는 프로그램

- 학교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 시기, 횟수, 장소 정하기
 - 학교 행사일정 및 교육시설
활용여부 등 고려
 - 학부모 의견수렴 후 강사선정
- 교육준비
 - 교육 참가신청
 - 교육자료 및 기자재 확인

- 교육실시
 - 운영계획에 따라 진행
- 교육종료 후 만족도조사
 - 솔직한 답변을 위해 익명 진행
권장
- 운영평가
 - 만족도조사 포함한 운영 결과
분석 후 다음 학부모교육 진행
시 반영

▣ 강사수당 등 사용예산은 【교회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하면 됩니다.

학부모회를 통한 학부모교육의 장점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에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교육 철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교육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의 프로그램 운영도 권장합니다.



그 외 학부모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활동”도 진행하는데요. 이는 학부모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연계하여 비영리 교육사업을 운영·참여하는 활동입니다.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례로는 학교협동조합의 학교 매점, 돌봄사업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회원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알아보기

-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모두가 회원으로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학부모회 관련 용어에서 언급했듯이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의 모든 학부모가 학부모회의 회원이므로 일부의 학부모 임원들만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학부모회 ▶

학부모 전체 ○

학부모 임원만 X

임원

제7조(임원 등의 구성)

-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알아보기

-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부모로 구성되지만, 원활한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이를 대표하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학부모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실정에 맞게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임원 외에도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제8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알아보기

- 조례에서 규정한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임원으로 활동 중에 자녀가 졸업을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인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는 임원으로 활동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④ 제3항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되,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알아보기

우리 학교의 학부모회를 대표하는 임원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여 교내·외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대의원회 등의 회의 소집을 포함한 다양한 학부모회 활동을 총괄하여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부모의 의견이나 협조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회장은 1명이니 모든 것을 혼자 다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을 할 “부회장”이 있기에 학부모회 업무를 함께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활동이 계획에 맞춰 잘 운영되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잘 살펴보며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진행합니다. 꼼꼼한 감사를 거쳐 그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학부모회 스스로 그 활동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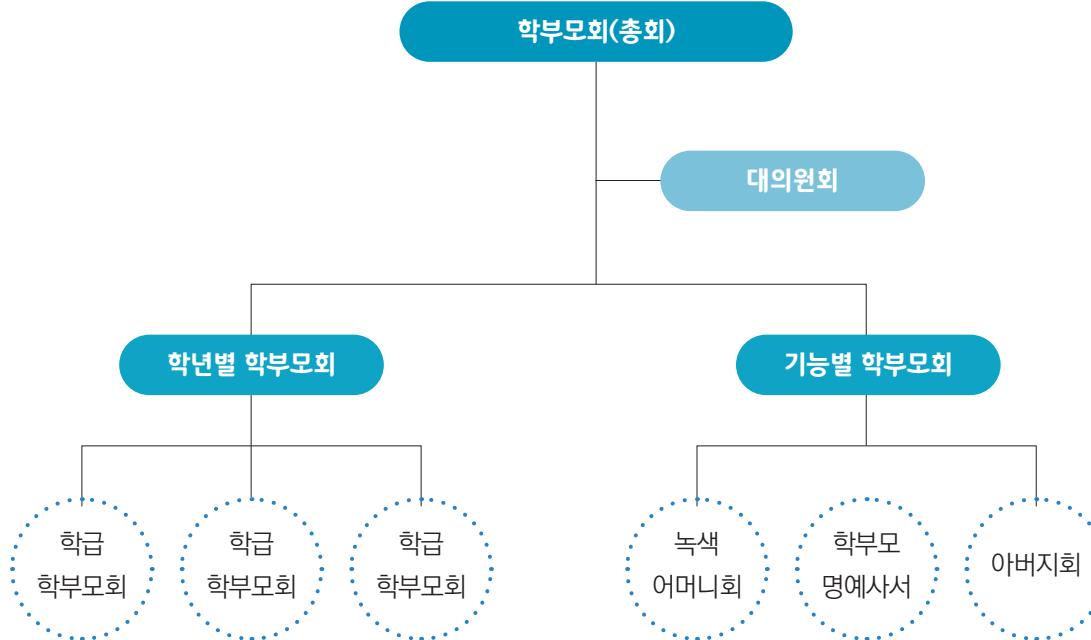
총괄

제11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 알아보기

- 학부모회의 총회를 조례로 정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춰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및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회 조직은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총회

제12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❸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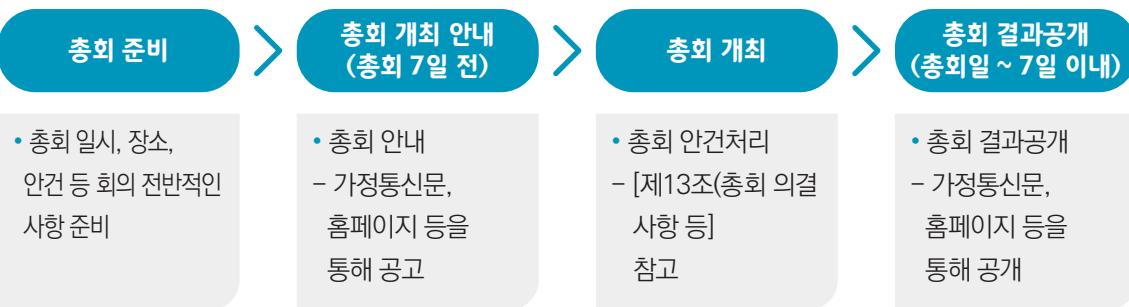
- “총회”는 해당 학교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요.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그 외 임시총회로 나뉩니다. 임시총회는 학부모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전체 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회 총회 시기와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볼까요?

■ 총회 개최시기 및 의결정족수

구분	개최시기	의결정족수
정기총회	• 매년 3월	
임시총회	• 학부모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전체 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 순서



임시총회의 경우 회원들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여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개최 및 결과에 대하여 모든 학부모가 내용을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신설 학교 등 학부모회를 처음 구성하는 경우, 학교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 알아보기

총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안건으로 다루게 될까요? 학부모회의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조례로 따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1년 동안 활동하게 될 우리 **학부모회의 활동 계획 수립과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도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 줄 **임원도** 이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중에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부모회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총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한편,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간의 협력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회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여 활동하고,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법률과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 * 및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이나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제출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2.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7.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④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대의원회

제14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알아보기

해당 학교의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와 비교한다면, “**대의원회**”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대의원에 의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대의원회는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과 학년별 · 학급별 ·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각급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의원의 수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이처럼, 대의원회는 총회와 연계되는 회의체로 볼 수 있는데요. 학부모회 회장이 대의원회 회장을 겸임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역시 회의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매년 1회 이상의 정기회와 그 외 임시회로 이루어 지는데요.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가 있을 때나 전체 대의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합니다. 총회와 같이 대의원회도 회의 개최와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1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알아보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회에서 의결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달하는 대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안건 공고 및 결과공개 등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학년별 · 학급별 · 기능별 학부모회

제16조(학년 · 학급 · 기능별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부모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❸ 알아보기

건강한 학부모회를 이루려면 기초가 되는 학년별 · 학급별 학부모회가 튼튼해야 합니다. 학년별 · 학급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과 학급의 모든 학부모로 구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그 대표를 선출합니다.

예를 들면 학급별로 학부모들이 모여 학급 학부모회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후 학급 학부모회 대표들이 모여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전체 학부모회는 가장 기초가 되는 학급 학부모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수의 임원 중심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능별 학부모회는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인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예시로 녹색어머니회, 아버지회, 학부모명예사서 등 학교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물론 기능별 학부모회도 학부모회에 속하므로 학부모회 규정과 총회 ·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전체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7조(해산)

-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 알아보기

앞서 언급한 학부모회 설치(동 조례 제3조)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 바와 같이, 학부모회 해산에 관련한 사항도 근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학교 통·폐합 등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 해당합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알아보기

다양한 학부모회 활동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사업에 따라 교육청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기도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19조(위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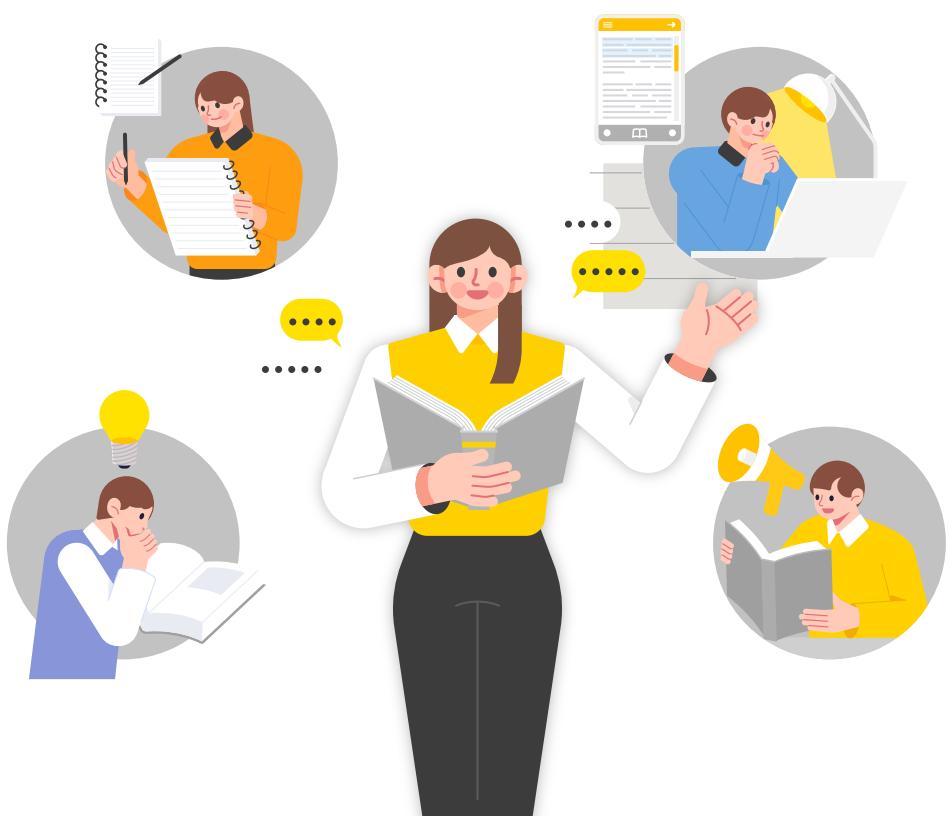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알아보기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세세한 모든 내용을 조례에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두었으니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예산편성 내역기준' 중**

- : 학부모와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학부모 협력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 ⇒ 학부모 참여제도 운영,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등 편성 권장(학교별 특수성 및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



Chapter



손예 +
잡하는 **길라잡이**
학부모회

Q&A로 알아보는 학부모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Chapter 1에서 조례를 바탕으로 학부모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학부모회가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으신가요? 그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궁금하고 헷갈렸던 점들을 Q&A를 통해 풀어볼까요?

01

학부모회가 궁금하다?

Q 1.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먼저, 학부모회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모든 학부모로 구성되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교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에 두는 심의·자문 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학교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합니다.

Q 2.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회 규정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A

학부모회 규정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기존 규정의 개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절차

: 학교와 학부모회 임원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¹학부모회 규정을 점검합니다. 전체 ²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 ³제·개정(안)을 마련하고, 학부모회 ⁴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⁵최종 규정의 제·개정을 공포합니다.



Q 1.

학부모회 총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회 총회는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중요 정기총회 절차

A

총회 준비
(2월~3월초)

-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총회의 전반적인 사항 준비
 -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가능(임원, 대의원, 회원, 학교관리자, 교직원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및 학부모회 구성·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 의견수렴
-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계획
- 회의 안건 준비
 -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안)
 - 학부모회 임원선출
 -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당해연도 학부모회 활동 계획(안)
 - 전년도 학부모회 활동 및 예산집행 결과 보고 등
- 학부모회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 준비와 관련된 사항



총회 안내
(총회 7일 전)

- 학부모회 회원자격 및 투표권 안내
 - 모든 학부모가 학부모회 회원임을 공고화
- 총회 개최 안내 (회의일시, 장소, 의안 등)
 - 회원의 1/10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총회 개최 *

- 총회 안건처리
 - 학부모회 총회 준비위원회와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진행



총회 결과공개
(총회일 ~
7일 이내)

- 총회 결과공개
 - 회의 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학부모 회원에게 공개

* 총회 진행 예시(안)

구분	진행
① 개회선언(성원확인) 및 국민의례	학부모회장
② 학교장 및 학부모회장 인사	학부모회장
③ 총회 안건 확정	학부모회장
④ 보고안건	
- 학부모회 활동 및 예산집행 결과 보고	학부모(부)회장
- 학부모회 감사보고 등	학부모회 감사
⑤ 의결안건	
-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학부모회장
- 학부모회 임원 선출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선출관리위원장
-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학부모회장
- 기타 의결이 필요한 사항	학부모회장
⑥ 폐회	학부모회장

▣ 학교에 따라 총회일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기도 합니다.

※ 임시총회 절차는 정기총회에 준함

Q 2.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학부모회 조례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부모회 총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K-Voting)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투표·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지원
(1~2월경, 각급 학교별 온라인 투표시스템 수요조사에 따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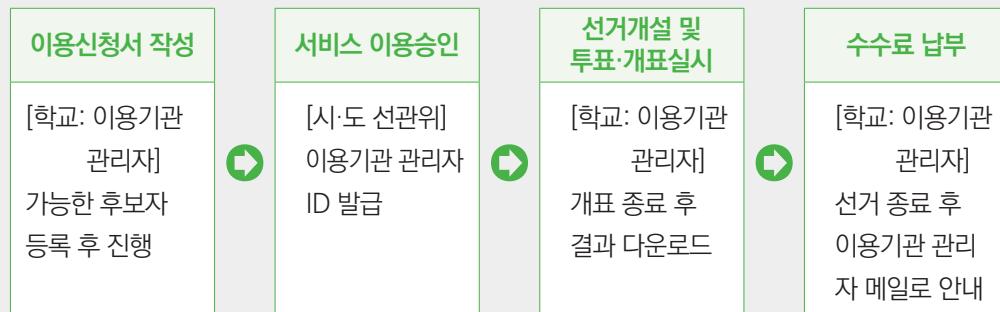
② 학교 e-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한 투표 등 학교 자체적인 방법 사용

: e-알리미 시스템으로 총회 개최 공지, 투표 링크 안내, 총회 결과 공지 등 진행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부모회 총회 세부 사항 ①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K-Voting)

※ 서비스 이용절차 (홈페이지 접속: www.kvoting.go.kr)



* ‘이용기관 관리자’란, 각 학교의 대표자가 ‘이용기관 관리자 지정관계 문서’에 의해 지정하여 시스템에서 선거개설, 선거인명부 등록, 투표 및 개표실시 등 해당 선거의 온라인 투표 및 개표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합니다.

A

1. 이용기관 관리자의 서비스 이용 절차



2. 선거인(학부모)의 서비스 이용 절차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K-Voting 은

1~2월경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여 시스템 사용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절차 및 시스템 사용 방법의 사항을 별도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부모회 총회 세부 사항 ②

- 학교 e-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한 투표 등 학교 자체적인 방법 사용

※ 온라인 총회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총회 내용은 동일)



※ 온라인 총회 진행 예시(안)

1. 총회 개최- 전체 문자 발송 (예시)

[Web발신]

○○학교 온라인 학부모회 총회 참석하기: <http://iamsch.net/exe23het?ew>

2. 총회 개최- 총회 내용 (예시)

- 학부모회에서 내용을 작성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전달

2023년 ○○학교 온라인 학부모회 총회 (내용 예시)

A

2023년 ○○학교 학부모회 정기총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 상황에 따라 온라인 총회를 진행합니다.

기 배부된 총회 자료를 참고하셔서 각 안건에 대해 동의, 비동의를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총회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학부모마당-학부모회」와 「학부모회 밴드(Band)」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건 1) ○○학교 학부모회 규정을 제시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안건 2) 2022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및 결산 내용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세요.

-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안건 3) 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후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각각 표시하여 주세요.

(1) 회장 후보 ○○○ :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부회장 후보 ○○○ :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3) 감사 후보 ○○○ :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예시)

학부모회 및 학교참여 활동에 관한 안내 사항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부모회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에 체크 가능하나, 정보 제공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 항목: 학부모(성명/휴대폰번호), 자녀(성명/학년/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하시나요?

-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Q 3.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을 총회 당일에 안건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나요?

A

원칙상의 총회 참석은 학부모가 총회 당일에 총회 장소에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총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총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위임장 제출로 **의결권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 개최 시 위임장을 포함하여 회원의 1/10 이상 출석하면 성원이 되고,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은 실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Q 4.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을 총회 당일에 안건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나요?

A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의 경우 조례 제13조의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회의 안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부모회 조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회 당일, 기존에 공고된 의안 외에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타 안건으로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 또는 수정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Q 5.

한 학교에 다니는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때, 학부모의 투표권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A

학부모회 회의에서 부모는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재학생 기준으로 1인 1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

OO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2명일 때

- 학부모 1명 참석하면
→ 학부모 1명에게 **1표 투표권**
- 학부모 2명 참석하면
→ 학부모 각각 1표로, **2표의 투표권**

OO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1명일 때

- 학부모 1명 참석하면
→ 학부모 1명에게 **1표 투표권**
- 학부모 2명 참석해도
→ 학부모 1명에게 **1표 투표권**

단, 3명의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더라도, 투표(의결)권은 최대 2표 가능합니다.



Q 1. 학부모회 임원 선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회 임원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출하여야 합니다.

※ 임원 선출 절차

A

선출관리위원회 * 구성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 학부모 0명으로 구성하며, 선거사무를 총괄

총회 개최 안내 및
임원 선출공고
(총회 13일 이전)

- 임원선거 및 입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안내
서식1-1, 1-2, 1-3 활용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하여 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총회 13일 이전)

- 선거인 명부 작성 서식1-8 활용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장소에 비치

후보자 등록
(총회 12일 전부터 5일간)

- 학부모회 임원별(회장, 부회장, 감사)로 각각 입후보 등록
서식1-5, 1-6, 1-7 활용

선거 및 총회공고
(총회 7일 전)

-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안내(이름, 경력, 소견 등)
서식1-9, 1-10, 1-11 활용
- 일시, 장소, 방법 및 지침물 등 선거에 관한 사항 안내

총회 개최

- 투표- 입후보자 소견 발표 후 직접 투표 서식1-12 활용
 - 개표- 투표 마감후 선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개표
- 예외** 불가피한 경우, 우편투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도 가능합니다.

당선자 공고

- 회장, 부회장, 감사의 당선 사실 공고 서식1-13, 1-14 활용

선거 결과안내
(총회일 ~ 7일 이내)

- 선거 결과를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 서식1-16 활용

* 학부모회 총회에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모두 선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해주세요.

(학부모회의 선출관리위원과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은 중복 가능합니다.)

Q 2.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일 경우, 학부모회 임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출마 불가능한가요?

A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각각의 선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통합의 선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때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임원 출마는 불가하나, 교자는 가능합니다.

1.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회 임원 출마 불가하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출마는 가능.
2.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출마 불가하나, 학부모회 임원 출마는 가능.
3. 통합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둘 다 출마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입후보등록 기간에 입후보하면, 해당 임원 출마도 가능합니다.(서식 1-5 활용)

Q 3.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A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겸임이 가능합니다. 학부모회 임원선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경우, 두 기구의 겸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교환 등 상호 연계가 더 원활히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Q 4.

여러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A

학부모회 임원은 여러 학교 겸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일 경우 두 학교에서 각각 학부모회 회장을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여러 학교 겸임이 불가합니다. 학부모회 임원과 달리 학교운영위원회는 한 학교의 위원 활동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Q 5.

학생은 1명인데 어머니는 학교운영위원회, 아버지는 학부모회 임원이 가능할까요?

A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적용되는 법률과 조례가 다르기에 부모가 각자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여 활동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더 많은 가정의 학부모 참여를 위해 권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6.

학부모회 임원 선출 후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원에 대한 후보자가 없을 시, 해당 임원에 대한 선거 공고를 재공고하여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재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총회 당일 총회에서 등록을 받아 선출하도록 합니다.**

학부모회 임원은 조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므로, 대의원회로 임원선출을 위임하거나 기타 회의 등에서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가 되어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7.

학부모회 임원 정수와 입후보자 등록 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투표를 해야 할까요?

A

학부모회 임원 정수와 입후보자 등록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이라 하더라도 학부모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 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시 규정에 명시하거나 임원 선거 안내 가정통신문에 미리 명시해두면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임원 정수 및 입후보자 인원에 따른 임원선출 방법



Q 1.

학부모회 회원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부모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요, 그 개인정보는 해당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학기 초,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회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회원의 정보를 학부모회에 제공합니다. **서식1-17 활용**
또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파기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원천 삭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 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기간
- ② 개인정보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소각, 전자파일은 복원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Q 2.

학부모회 활동 계획은 언제, 어떻게 수립하나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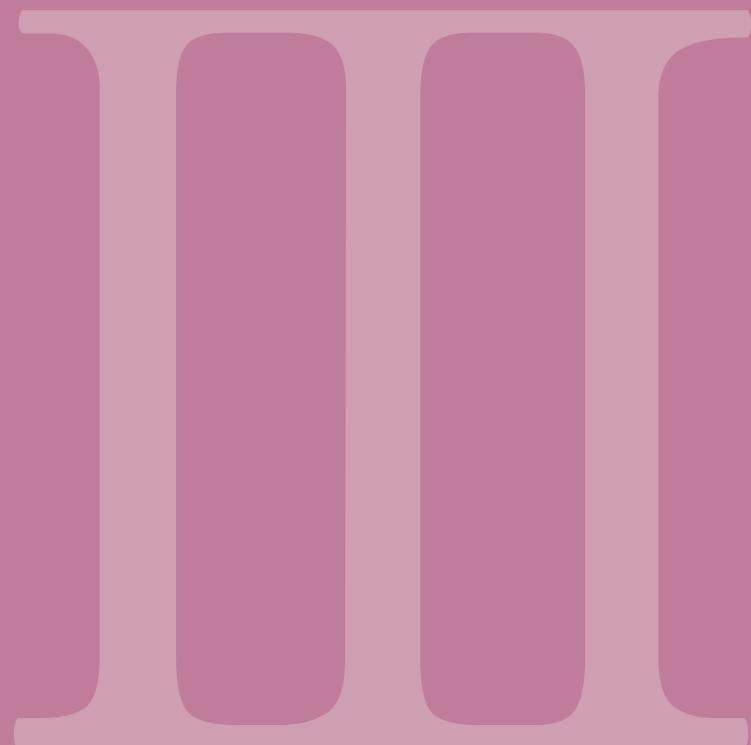
학부모회 활동 계획수립은 **학교회계 예산편성(전년도 12월~2월)**과 **학교교육계획(1월~2월)**을 수립하는 시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교육계획과 학부모회 예산을 반영하여 학부모회 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연도 3월에 개최하는 학부모회 총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즉, 전년도 학부모회가 다음 학년도의 학부모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선출되는 학부모회에 인수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학부모회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학부모회 사업 방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 정기총회에서 학부모회 활동 계획을 의결하고, 다음 학년도 학부모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운영하면 됩니다.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회 활동을 계획하고자 한다면, 학교의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고려하기 위해 학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학교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활동을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Chapter



손에 +
잡하는
학부모회
길라잡이

학부모회 따라하기 (서식 모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다음의 서식은 예시자료입니다.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식 파일은 [인천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서식명	페이지
구성	1-1 학부모회 종회_ 가정통신문	45
	1-2 학부모회 임원 선출_ 공고문	46
	1-3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입후보 등록 안내문	47
	1-4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사퇴서	48
	1-5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	49
	1-6 학부모회 임원 선출_(입후보자용)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0
	1-7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임원 입후보자 등록대장	51
	1-8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임원 선거인 명부	52
	1-9 학부모회 종회_ 개최공고	53
	1-10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임원 선거 안내문	54
	1-11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서	55
	1-12 학부모회 임원 선출_ 투표용지	56
	1-13 학부모회 임원 선출_ 당선자 공고	57
	1-14 학부모회 임원 선출_ 당선통지서	58
	1-15 학부모회 종회_ 회의록	59
	1-16 학부모회 종회_ 결과 공고	60
	1-17 학부모회 종회_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1
	1-18 학부모회 종회_ 임시총회 안건 발의서	62
	1-19 학부모회 종회_ 임시총회 안건 발의안	63
	1-20 학부모회 종회_ 임시총회 안건 발의자 서명 날인서	64
1-21 학부모회 종회_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	65	
운영	2-1 학부모회 운영_ 연간 활동계획서	66
	2-2 학부모회 활동_ 모니터링 의견서	67
	2-3 학부모회 활동_ 의견 제안서	68
	2-4 학부모회 활동_ 의견 제안에 대한 심의 결과 알림	69
	2-5 학부모회 활동_ 자원봉사 및 교육활동 참여 희망서	70
	2-6 학부모회 활동_ 학부모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 조사	71
	2-7 학부모회 활동_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정통신문	72
	2-8 학부모회 운영_ 감사 결과보고서	73
	2-9 학부모회 운영_ 활동 결과보고서	76
	2-10 학부모회 운영_ 인수인계서	79



• 1-1 학부모회 총회_ 개최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제목: ○○학교 학부모회 총회 개최 안내	제 20○○-○호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학부모회 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에 출마하고 싶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월 ○일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 ○. ○.(○요일) ○○:○○

■ 장소: 본교 ○○실

■ 참석대상: 본교 학부모 전체

■ 회의안건

1.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사항
2. 2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3. 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선출
4. 20○○학년도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활동 계획수립
5. 전년도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6. 전년도 학부모회 예산 집행사항 보고
7. 기타사항

■ 담당자: ○○○ (☎ 032-123-4567, Fax 032-765-4321)

20 년 월 일

○○학교장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가. 자격: 본교 학부모
- 나. 장소: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실)
- 다. 기간: 20○○년 ○월 ○일부터 ~ 20○○년 ○월 ○일까지 (○일간)
- 라. 구비서류: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가정통신문으로 배부)

2. 학부모회 임원 선거

- 가. 선거일시: 20○○. ○. ○.(○요일) ○○:○○
- 나. 선거장소: 본교 ○○실
- 다. 선거방법: 학부모 총회(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 라. 임원정수: 회장 1명, 부회장 ○명, 감사 ○명
- 마. 소견발표: 선거 전 후보 1인당 ○분 내외 소견 발표
- 바. 선거인명부 열람: 20○○. ○. ○. ~ ○. ○. (○○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20 년 월 일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1-3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입후보 등록 안내문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등록 안내문

희망찬 20○○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 학부모회를 이끌어갈 임원을 3월 총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교 재학생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임원 선출 인원 및 직무

구분	인원	직무
회장	1명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
부회장	○명	학부모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감사	○명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 감사

2. 입후보등록

- 가. 자격: 본교 학부모
- 나. 장소: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실)
- 다. 기간: 20○○년 ○월 ○일부터 ~ 20○○년 ○월 ○일까지 (○일간)
- 라. 구비서류: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가정통신문으로 배부)

20 년 월 일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1-4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 사퇴서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 사퇴서

1. 구분: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
2. 성명:
3. 생년월일:
4. 사퇴이유: 본인은 20○○학년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퇴하고자 합니다.

성명 (인)

○○학교장 귀하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1-5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 (회장, 부회장, 감사)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자녀정보	학생성명: (학년 반)				
학교활동 경력					
입후보 소견					

사진
(3*4)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학교 20○○년도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 감사)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임원 입후보자용) 1부 첨부

20 년 월 일

입후보자 성명 (인)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1-6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입후보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임원 입후보자용)

개인정보 수집·이 용 동의	목 적	-2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선출 및 운영 (선출자료 작성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항 목	-학부모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교활동경력 -자녀의 성명, 학년, 반
	보유 및 이용기간	-20○○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기간까지 보유 및 이용
	거부권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2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선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목 적	-2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선출 및 운영 확인
	제공받는자	-학교 홈페이지 이용자 및 가정통신문 수령자 (본교 학부모 및 불특정 다수인)
	항 목	-학부모의 성명, 성별, 연령, 학교활동경력 -자녀의 학년
	보유 및 이용기간	-2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선출 및 임기까지
	거부권리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2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선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 년 월 일

입후보자 성명 (인)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장 귀하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6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임원 입후보자 등록대장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대장 (회장, 부회장, 감사)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1-8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임원 선거인 명부

학부모회 임원 선거인 명부 (○○용)

■ 일시: 20○○. ○. ○. (○○:○○)

■ 장소: ○○실

연번	학년 반	학생 성명	학부모 성명(선거인)		서명
			관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는 학부모회 총회의 참석 등록부로 사용할 수 있음



• 1-9 학부모회 총회_ 개최 공고

200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총회 개최 공고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회 ○○학교 학부모회 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일시: 2000. ○. ○.(○요일) ○○:○○
- 장소: 본교 ○○실
- 참석대상: 본교 학부모 전체
- 안건
 - 1.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사항
 - 2. 200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 3. 200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4. 2000학년도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활동 계획수립
 - 5. 전년도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 6. 전년도 학부모회 예산 집행사항 보고
- 참고사항: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인사, 학생 방청 가능

20 년 월 일

○○학교 학부모회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1-10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임원 선거 안내문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소견 및 선거 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학부모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회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부모회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회장 1명, 부회장 ○명, 감사 ○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아래 입후보자의 소견을 잘 읽어보시고 선거 당일(학부모회 총회) 해당 장소에서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서: 붙임
2. 선거안내
 - 가. 일시: 20○○. ○. ○.(○요일) ○○:○○
 - 나. 장소: 본교 ○○실
 - 다. 지참: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 서류

20 년 월 일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1-11 학부모회 임원 선출_ 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서

학부모회 임원 (회장,부회장,감사)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서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1-12 학부모회 임원 선출_ 투표용지

[기표용]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회장 선출 투표용지

기 호	성 명	기 표 란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기명용]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회장 선출 투표용지

성 명
기명 투표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학부모회 부회장·감사를 선출할 경우 명칭을 바꾸어 사용

• 1-13 학부모회 임원 선출_ 당선자 공고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년 ○월 ○일 ○○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학부모회 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직위	성 명	성 별	자녀학년	비고
회장				
부회장				
감사				

20 년 월 일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1-14 학부모회 임원 선출_ 당선통지서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임원 당선통지서

성명 ○ ○ ○

귀하게서는 ○○학교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1-15 학부모회 총회_ 회의록

20○○학년도 제○회 학부모회 회의록

회의종류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의원회(정기회), 대의원회(임시회) 등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회의안건에 대한 처리 사항을 개조식으로 작성함		
기록자	(인)	학부모회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1-16 학부모회 총회_ 결과 공고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총회 결과 공고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20○○년 ○월 ○일 학부모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안건을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안건명	결과	투표
1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안	원안 가결	만장일치
2	전년도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원안 가결	
3	전년도 학부모회 예·결산 보고	원안 가결	
4	전년도 학부모회 회계 감사 보고	원안 가결	
5	2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별도 공고	
6	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별도 공고	
7	20○○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계획	대의원회 위임	만장일치
	⋮		

20 년 월 일

○○학교 학부모회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총회 결과는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 1-17 학부모회 총회_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자 (학부모)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자녀정보	학생성명: (학년 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	- 소속 학교 학부모회 회원간 연락처 제공 - 학부모회 및 학교참여 활동에 관한 안내 사항 및 관련 정보제공
	항목	- 학부모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자녀의 성명, 학년, 반
	보유 및 이용기간	- 20○○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기간까지 보유 및 이용
	거부권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20○○ 학년도 학부모회 운영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목적	- 소속 학교 학부모회 회원간 연락처 제공 - 학부모회 및 학교참여 활동에 관한 안내 사항 및 관련 정보제공
	제공받는자	- 해당학교, 학부모회 임원
	항목	- 학부모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자녀의 성명, 학년, 반
	보유 및 이용기간	- 20○○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기간까지 보유 및 이용
	거부권리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20○○ 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선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학부모회가 제공받는 상기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써, 20○○학년도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학교 학부모회장 귀하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안건발의서

20○○. ○. ○.

수신: ○○학교 학부모회장

제목: ○○○ 실시에 관한 ○○ (안)

위의 '○○○ 실시에 관한 ○○ (안)'을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 실시에 관한 ○○ (안) 1부.

2. 서명 날인서 1부. 끝.

발의자 ○○○ 외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1-19 학부모회 총회_ 임시총회 안건 발의안

○○○ 실시에 관한 건

안건번호	
------	--

제안 년월일: 20○○. ○. ○.
발의자: ○○○ 외 인

1. 제안이유:

2. ○○○ 실시 계획

사업명	사업개요	소요액	비고

3. 기타사항: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1-20 학부모회 총회_ 임시총회 안건 발의자 서명 날인서

안건 발의자 서명 날인서

연번	구분	성명	서명 · 날인	비고
1	2-1 학부모	○○○		
2	"	○○○		
3	3-2 학부모	○○○		
4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1-21 학부모회 총회_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

학부모회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

20○○. ○. ○.

수신: ○○학교 학부모회장

제목: ○○학교 학부모회 임시총회 소집 요구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학부모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1. 소집일시:

2. 소집이유:

3. 소집요구자: ○○○외 인

붙임 서명 날인서 1부. 끝.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2-1 학부모회 운영_ 연간 활동계획서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활동(운영)계획서

I. 학부모회 개요

1. 학교현황
2. 운영목적
3. 학부모회 소개

II. 학부모회 운영계획

1. 운영의 실제
 - 가. 운영계획
 - 나. 활동 내용
 - 1)

III. 학부모회 운영효과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2-2 학부모회 활동_ 모니터링 의견서

학부모회 활동_ 모니터링 의견서

학부모회명	
작성일자	
작성자	
분야	의견 제시 및 개선 방안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2-3 학부모회 활동_ 의견 제안서

학부모회 의견 제안서

20○○. ○. ○.

수 신: ○○학교운영위원장

경 유: ○○학교장

제 목: ○○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제안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학부모회 의견을 제안합니다.

제안명	
제안이유	
학교교육 모니터링 결과	

붙임 1. 의견수렴 결과 1부.

2. 의견 제안 서명 날인서 1부. 끝.

○○학교 학부모회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2-4 학부모회 활동_ 의견 제안에 대한 심의 결과 알림

학부모회 의견 제안에 대한 심의 결과 알림

20○○. ○. ○.

수신: ○○학교 학부모회장

경유: ○○학교장

제목: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처리 결과 알림

위 안건에 대하여 심의(자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심의결과

심의안건	
심의결과	
심의내용	

2. 세부사항: 붙임참조

붙임 세부 결과서 1부. 끝.

○○학교운영위원장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2-5 학부모회 활동_ 자원봉사 및 교육활동 참여 희망서

학부모 자원봉사 및 교육활동 참여 희망서

1.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특기사항			

2. 봉사활동 및 교육활동 참여영역

영역	활동 내용	시기	참여 희망 사항		비고 (특기사항 및 경험유무)
			희망 여부	참여 가능한 시기 · 내용 · 방법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2-6 학부모회 활동_ 학부모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 조사

학부모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 조사

학부모님의 희망에 따라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희망 조사서를 작성하셔서 ○월 ○일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희망 프로그램	
자녀의 발달특성 이해	① 자녀와 통하는 대화법	② 부모와 함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생활 지도	③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 활동	④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학습지도	⑤ 자녀 학습 플래닝	⑥ 독서교육
진로·진학 지원	⑦ 기본학습태도	⑧ 신나는 영어
	⑨ 교과학습지도	⑩ 사이버 가정학습 활용법
부모역량 강화	⑪ 학교폭력 예방	⑫ 휴대전화 과몰입 예방 및 치료
부모-자녀 관계역량 강화	⑬ 진로 · 적성지도	⑭ 미래사회의 특징과 직업

20 년 월 일

○○학교 학부모회장



학부모교육 개설 희망 프로그램 조사서

자녀정보		학부모성명	개설 희망 프로그램 번호	희망 교육일 (택 1)	희망 교육시기 (택 1)
학년 반	성명			<input type="checkbox"/> 주중 <input type="checkbox"/> 주말	<input type="checkbox"/> 오전 <input type="checkbox"/> 오후 <input type="checkbox"/> 야간

20 년 월 일

성명 (인)

○○학교 학부모회장 귀하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e-가정통신문 등 온라인으로도 의견수렴 권장

• 2-7 학부모회 활동_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정통신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안내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님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참가 희망서에 작성하셔서 ○월 ○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좌명: ○○○○○○○
2. 일시: 20○○. ○. ○.(○요일) ○○:○○
3. 장소: 본교 시청각실
4. 강사: ○○○
5. 참가비: 무료

20 년 월 일

○○학교 학부모회장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 희망서

자녀정보		학부모성명	참여여부 (O,X)	연락처
학년 반	성명			

20 년 월 일

성명 (인)

○○학교 학부모회장 귀하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 2-8 학부모회 운영_ 감사 결과보고서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감사 결과보고서

학부모회명		
학부모회 임원	직위	성명 및 날인
	회장	(인)
	부회장	(인)
감사기간		
감사결과 종합개요		

작성자: ○○학교 학부모회 감사 ○○○ (인)

(뒷면 계속)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2-8 학부모회 운영_ 감사 결과보고서

1. 주요 사업내용

사업명	활동계획	활동내용	비고

2. 수입 및 집행 내역

(뒷면 계속)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2-8 학부모회 운영_ 감사 결과보고서

3. 감사결과 (우수사항 및 개선사항)

사업명	내용	비고
우수사항		
개선사항		

4. 종합의견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2-9 학부모회 운영_ 활동 결과보고서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활동 결과보고서

학부모회명		
학부모회 임원	직위	성명 및 날인
	회장	(인)
	부회장	(인)
	감사	(인)
활동결과 종합개요		

작성자: ○○학교 학부모회장 ○○○ (인)

(뒷면 계속)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2-9 학부모회 운영_ 활동 결과보고서

1. 주요 사업내용

사업명	활동계획	활동내용	비고

(뒷면 계속)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2-9 학부모회 운영_ 활동 결과보고서

2. 학부모회 자체평가

사업명	내용	비고
우수사항		
개선사항		

3. 수입 및 집행 내역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2-10 학부모회 운영_ 인수인계서

20○○학년도 ○○학교 학부모회 인수인계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전임 학부모회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		
신임 학부모회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		
인수인계 목록 (별도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회 활동계획서• 학부모회 진행사항 및 미결사항 목록• 학부모회 활동 자료• 기타 차기 학부모회가 활동에 필요로 하는 참고자료 일체	

20○○년도 학부모회 업무를 위와 같이 인수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전임회장 성명 ○○○(인)
인수자 : 신임회장 성명 ○○○(인)
입회자 : 학교장 또는 담당자 ○○○(인)

※ 서식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지금 검색창에 [인천학부모지원센터](#) 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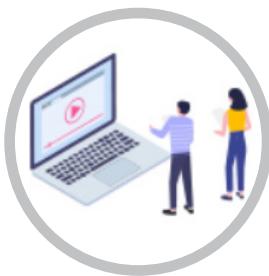
학부모 학교참여



학부모
자치활동 컨설팅



학부모회
서식모음



인천 학부모
꿈디교육

손에 잡히는 길라 잡이 학부모회 집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자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기획 · 편집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지원팀장	김은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지원팀	김미현, 임소영
학부모회 매뉴얼 정비 TF팀 위원	권명숙, 김성원, 류옥경, 박경화 정은주, 이연수, 임선연, 황세라

검토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새말초등학교 교감	김현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새말초등학교 교사	한정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예송초등학교 교사	남수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발행일 : 2023년 2월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http://www.ice.g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